

「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9. 5. 13. 제정 판 (시행 2019. 3. 1.) → 2020. 6. 8. 개정 판 (시행 2020. 6. 1.)

바뀜 4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379/compare?from=907&to=995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10:00:56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사업)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. 1. 국제하계(동계)대학 운영 2. 국제하계(동계)대학 관련 강사 확보 및 관리 3. 각종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4. <u>학생 간 해외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</u> 5.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	제4조(사업)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. 1. 국제하계대학 운영(개정 2020-06-08) 2. 국제하계대학 관련 강사 확보 및 관리(개정 2020-06-08) 3. 각종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4. <삭제 2020-06-08> 5.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
제11조(학기당 취득학점) 학생의 매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최대 9학점으로 한다.	제11조(학기당 취득학점) 학생의 매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최대 4학점으로 한다. <개정 2020-06-08>
제12조(학사일정 및 수업) 단기하계(동계)대학 과정의 학사일정 및 수업시간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	제12조(학사일정 및 수업) 단기하계대학 과정의 학사일정 및 수업시간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0-06-08>
제15조(출입국 보고) 수업에 5일 이상 무단결석 할 경우 출입국에 보고한다.	제15조(출입국 보고)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수업에 5일 이상 무단결석 할 경우 출입국에 보고한다. <개정 2020-06-08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사업)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.

1. 국제하계대학 운영
2. 국제하계대학 관련 강사 확보 및 관리
3. 각종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
- 4.
5.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

제11조 중 "9학점"을 "4학점"으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학사일정 및 수업) 단기하계대학 과정의 학사일정 및 수업시간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출입국 보고)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수업에 5일 이상 무단결석 할 경우 출입국에 보고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